웰컴자산운용
Welcome Asset Management

투자위험등급 :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웰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웰컴자산운용 ㈜

3. 판매회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및 집합투자업자 (www.welcome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26년 4월 1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5월 20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 6353-7300/ www.welcomefund.co.kr), 각 판매회사

9. 인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므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 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소규모펀드로 임의 해지되거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 합 투 자 업 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별로 기산)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및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투자하여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을 미 충족 시에는 세제혜택 및 공모주 청약 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벤처기업(비상장주식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 시장매도가 용이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13.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웰컴비트(BiT)플러스공모주증권 투자신탁 [채권혼합]"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소규모 펀드로 인한 임의 해지 또는 다른 펀드로의 전환 등으로 소득공제혜택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유자금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웰컴자산운용
Welcome Asset Management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2026.04.16.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펀드코드 : D2976]

투자위험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웰컴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주식부문]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하는 벤처기업 및 코스닥 대형주에서 투자 유망한 종목을 선별 투자하는 한편, 코스닥 및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코스닥 150 선물 매도 전략 병행
[공모주 투자]
저평가된 IPO 종목을 선별 투자하여 시장 대비 안정적인 초과 수익 창출 추구
[리츠 투자]
신규 상장 리츠종목에 IPO 참여 및 공모가 수준 저평가 리츠종목 장내 매수
[채권 및 유동부문]
단기채권 및 REPO 매수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 추구
※그러나 상기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 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 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 년차	2 년차	3 년차	5 년차	10 년차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2%이내	1.337	0.50	1.22	1.3510	257	399	545	855	1,7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1.837	1.00	1.58	1.8487	189	385	586	1,008	2,18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7%이내	1.087	0.25	0.86	1.1015	182	299	420	676	1,4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1.287	0.45	1.14	1.2991	133	271	414	716	1,574

주 1)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 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 3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5 년차	설정일이후	최초설정일
	25.04.17 ~ 26.04.16	24.04.17 ~ 26.04.16	23.04.17 ~ 26.04.16	21.04.17 ~ 26.04.16	20.04.10 ~ 26.04.16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14.48	10.56	9.32	5.20	9.18	2020/04/10
비교지수	24.28	12.46	9.39	5.41	6.59	
수익률변동성	7.52	6.97	6.61	6.98	7.21	

주 1) 종류 A 수익증권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되었으며, 나머지 종류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비교지수 (KOSPI 지수 X 20%)+(CD 금리 X 80%)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6)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 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 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주식혼합파생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 투자 기구 수(개)	운용 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정호	1979	책임 (주식운용 1 팀, 팀장)	14	2,449	22.54	15.22	22.54	15.22	4 년 11 개월
조일식	1968	책임 (채권운용팀, 본부장)	10	3,029	22.54	15.22	22.54	15.22	30 년 4 개월

주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4)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

	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 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및 공모주 우선배정에 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신주 및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 미 충족 시에는 소득공제 및 공모주 청약 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투자하며, 공모주는 일반적인 상장 주식에 비해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 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주식 및 비상장종목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비상장 포함) 주식 및 코스닥종목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반거래소상장기업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며, 가격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대량환매 발생시 편입자산의 유동성 및 환금성 제약으로 환매가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환매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기존 운용전략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익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매입 •15 시 30 분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4 영업일 지급 •15 시 30 분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4 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 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과세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은 거주자 개인, 내국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 함)로 과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관한 과세

구분	세부 내용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계약 기간	3년 이상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감면세액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그 투자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투자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소득공제방법, 감면세액 추징의 제외사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상기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웰컴자산운용㈜ (대표번호: 02-6353-73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welcomefund.co.kr)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효력 발생일	2026 년 5 월 20 일	존속기간	신탁계약기간은 설정일로부터 3 년 이상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 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 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랩(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 계좌의 자산으로 동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 나.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집합투자기구 공시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elcomefund.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elcomefund.co.kr)

CONTENTS

[목 차]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 풀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D297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2977
수수료선취-온라인(A-E)	D29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298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29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29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298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29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29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298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혼합 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미해당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붙임]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금액: 1조좌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1좌당 1원, 최초설정시, 원본액 기준)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으로 효력발생일 이후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모집개시일: 2020. 04. 10.

(3)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welcome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D297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2977
수수료선취-온라인(A-E)	D29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298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29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29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298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29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29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298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20년 4월 9일	효력발생
2020년 10월 7일	①집합투자규약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탁계약서 변경 - 2020.8.12일 기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이원화 된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 시킨『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②기준일 업데이트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회사개요, 운용자산 규모)
2021년 2월 23일	부책임운용역 삭제(홍민수)
2021년 5월 11일	- 최근 결산일 기준 정기갱신 - 법시행령 개정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 부책임운용역 추가(정호)
2022년 5월 10일	-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명 등 변경 (에셋원자산운용㈜ → 웰컴자산운용㈜)
2022년 6월 8일	법시행령 제 130 조 제 2 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2022년 12월 29일	-책임운용역 변경(오의균 →조일식) -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
2023년 4월 25일	-운용역 변경 ①책임운용역 : 조일식, 최일구→ 조일식, 정호 ②부책임운용역 : 정호 → 이정진 -정기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산정기준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설정 후 3년 경과) 등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 →4등급)
2023년 5월 25일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혜택 연장) 2)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02.20.시행) 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21.10.21.시행)

	5)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및 주소변경
2023년 7월 1일	- 부책임운용역 삭제 (이정진)
2024년 5월 29일	1) 정기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2)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4.03.01.시행) 4)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수익률 변동성 기준 변경)
2025년 5월 27일	1) 정기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2)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3)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5) 채권평가회사 추가(NICE피앤아이)
2026년 4월 3일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 연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2)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26년 5월 20일	1) 정기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2)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기간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이 해지일까지 펀드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설정의 규모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웰컴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웰컴금융타워 15층 (대표전화: 02-6353-7300, 홈페이지: www.welcomefund.co.kr)

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6.04.16. 기준)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주식운용부문]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혼합파생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호	1979	주식운용1팀 (팀장)	14	2,449	22.54	15.22	22.54	15.22	4년11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고려대학교 수학과 - 교보증권 장외파생상품운용(2006~2014) - 새마을금고중앙회 실정상품운용(2015~2016) - 하포리서치코리아(싱가폴) G.Manager(2016~2019) -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실(2019~2020) - 웰컴자산운용 주식운용1팀 팀장(2021년~현재)				

[채권운용부문]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혼합파생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조일식	1968	채권운용팀 본부장	10	3,029	22.54	15.22	22.54	15.22	30년4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SH자산운용 채권운용팀(1995~2000) -맥투자자문 채권운용팀(2000~2001) -피닉스자산운용 채권운용팀(2001~2004)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팀(2004~2007) -대신증권 채권부(2007~2009) -피닉스자산운용 채권운용팀(2009~2011)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채권운용1팀(2011~2021) -아샘자산운용 채권운용팀(2022~2022) -웰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2022~현재)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정호: 1개/5억
- 조일식: 1개/5억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해당사항 없음

③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운용기간	성명	운용기간
오의균	2020.04.10 ~ 2022.12.28	홍민수	2020.04.10 ~ 2021.02.22
최일구	2020.04.10 ~ 2023.04.24	정호	2021.05.11 ~2023.04.24
조일식	2022.12.29 ~ 현재	이정진	2023.04.25 ~ 2023.06.30
정호	2023.04.25 ~ 현재		

주)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주)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등 주요사항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1조에 의거,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판매보수 (연간, %)	수수료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0.50	납입금액의 1.2% 이내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0.25	납입금액의 0.7%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 없음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1.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0.4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집합투자기구,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0.1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 자산관리 좌를 보유한 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	0.00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0.45	납입금액의 0.9%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0.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최초매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	0.20	-	

※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최초 매입하는 종류 A 수익증권, A-E 수익증권 및 A-G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각각 납입금액의 1.2% 이내, 납입금액의 0.7% 이내, 납입금액의 0.9% 이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차등 적용된 판매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 및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종류형 수익증권의 설정일 정보는 향후 실제 설정 상황에 따라 기재될 예정입니다.

※수익증권의 각 종류별 운용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회사 보수는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주식부문]

코스닥150지수를 구성하는 벤처기업 및 코스닥 대형주에서 투자 유망한 종목을 선별 투자하는 한편, 코스닥 및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코스닥150선물 매도 전략 병행

[공모주 투자]

저평가된 IPO 종목을 선별 투자하여 시장 대비 안정적인 초과 수익 창출 추구

[리츠 투자]

신규 상장 리츠종목에 IPO참여 및 공모가 수준 저평가 리츠종목 장내 매수

[채권 및 유동부문]

단기채권 및 REPO 매수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 추구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 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주요내용
①주식	5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1항에 따른 투자 [㉮벤처기업(비상장 벤처기업 포함) 신주 및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이하 '벤처기업 신주'라 한다)는 신탁재산의 15%이상. 다만, 운용기간 중 투자비율 산정은 상기 본문의 투자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상기 본문 ㉮와㉯ 투자대상자산의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벤처기업 신주의 비율이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이하 '평균보유비율'이라 한다)이 각각(㉮와㉯를 합친 투자비중 및 ㉮의 투자비중) 100분의 50및 100분의 15이상
②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에 제한이 없으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사모사채권[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이어야 한다)
⑤집합투자증권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 증권
⑥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이하	
⑦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50% 이내	
⑧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50% 이내	
⑨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 내지 ④의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1 기타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금 및 환매조건부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해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2 기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정)		다음 각 목의 합계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가.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비중(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나.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비중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신용등급 하락시 집합투자업자의 조치사항]

주1)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상기『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주2)(주1)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상기『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주1)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한다.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증권총액 기준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주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상	투자 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은 예외
②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업어음증 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 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 중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

	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 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다만,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③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파생상품투자	1.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 초과하는 투자하는 행위 2.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집합투자 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⑥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⑦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내지 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초과하는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⑤ 내지 ⑨의 규정], [투자제한 ②내지 ④, ⑤의 가목 및 라목, 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투자제한 ② 및 ④]의 본문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적용하지 아니함
④ 상기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9개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3.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제1.2호 등에서 투자하고 있는 벤처기업(비상장 포함) 신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투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대한 6개월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운용기간 산정 6개월 중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이를 100분의 50으로 본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기본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저평가된 벤처기업 및 장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량 코스닥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차익 실현을 추구하는 한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통해 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코스닥150지수 및 코스피지수 선물 매도를 통해서 위험축소전략을 병행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 투자구조

웰컴자산운용이 강점과 레퍼런스를 보유한 공모주전략펀드 운용역량을 활용하여 투자수익 극대화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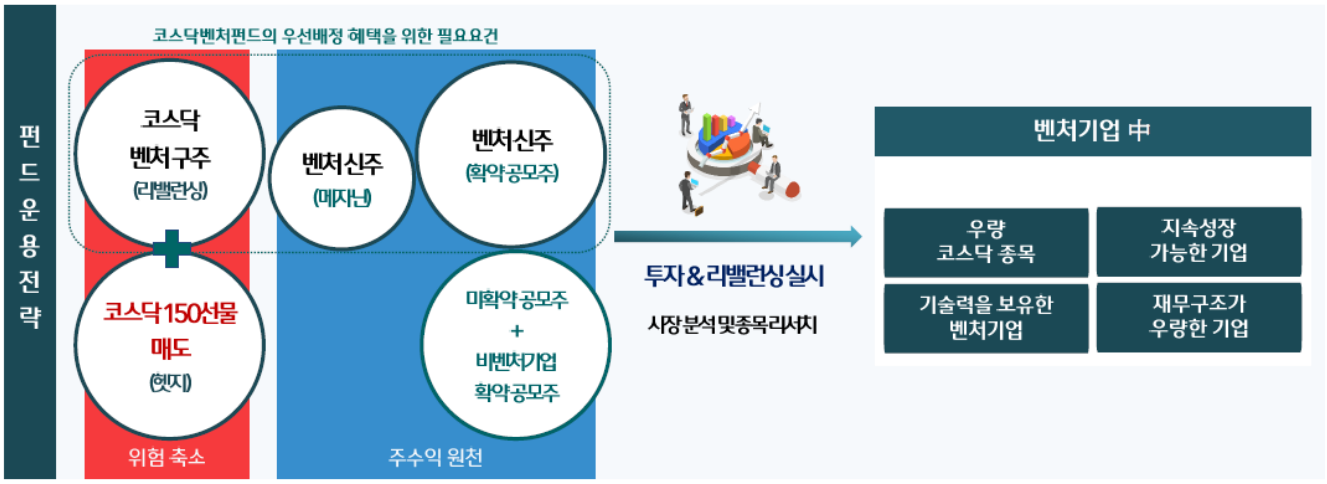

웰컴자산운용 Welcome Asset Management ※ 의무보유확약(Lock-up) :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청약 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일정 기간 안에 배정받은 물량을 매도하지 않을 것을 발행사와 확약하는 조건

(1) 주식운용전략 및 공모주투자전략

■ 자산구성 예시

투자자산 군의 높은 변동성을 완화하며 시장 변동성 대비 차별적인 수익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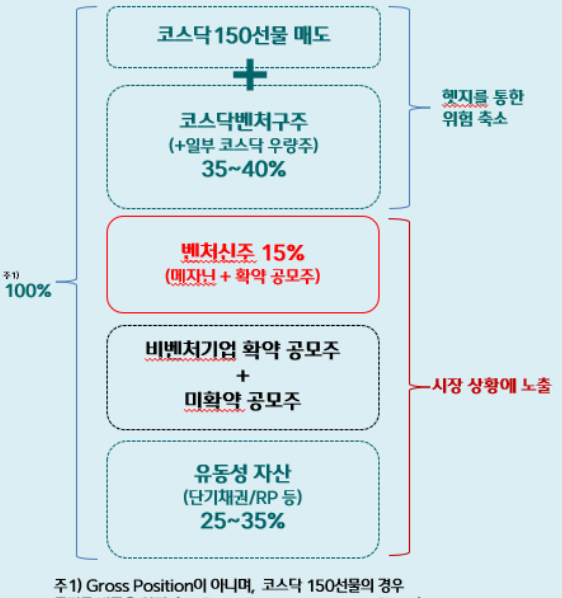

주1) Gross Position이 아니며, 코스닥 150선물의 경우 증거금 비중을 의미 (※ Gross Position : Long + Short)

위험 축소 전략 (코스닥벤처구주 35%)

■ 코스닥벤처구주(+일부 코스닥 우량주)에 대한 시장 노출도 헷지

코스닥 150 선물 매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 축소 전략 수행

- 선물 매도를 통한 위험 축소 전략을 기본으로 실행하여 시장 노출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최적화 선물 헷지 비중 조절
- 코스닥 우량주의 경우 코스닥 150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편입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이하로 관리

시장 상황 노출 (벤처신주 15% 및 비벤처기업 확약 공모주)

1. 벤처신주 : 상장 및 비상장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메자닌 및 공모주(확약)

■ 메자닌의 경우 (ex,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 전환가액의 Refixing 요건(통상 발행가 또는 코스닥 이전상장가격의 70%)을 추가하여 주가 하락에 일정 부분 방어 가능

2. 비벤처기업 확약 공모주

-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모주 수요 예측 참여 시 전략적 우수 종목의 경우 의무보유확약을 통하여 물량을 확보

※ 전환우선주 : 일정기간(통상 1년) 이후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 전환권 행사 후 장내 매매.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상환권이 추가된 전환우선주로 발행사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됨.
※ 리픽싱(Refixing) :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가격이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추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웰컴자산운용 Welcome Asset Management ※ 벤처구조 관련 주식은 코스닥150 주식 및 벤처기업 주식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상기 운용전략은 금융시장 상황 및 담당 운용역의 투자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확약 공모주의 경우 상장 후 이른 시일 내에 매도하여 시장 노출도 최소화 예정

■ 공모주투자 의사결정 기준

종목별 분석, 밸류에이션을 기초로 시장의 수급 상황까지 고려	밸류에이션의 매력도에 따라, 투자 가치가 높은 경우 의무보유확약을 통해 배정비율을 극대화	깊이 있는 분석 : 탐방 및 IR 참석, 내부 분석 및 외부 전문가와 의견 교류

■ 공모주투자 프로세스

※ 팀 운용 체제 : 웰컴자산운용 공모주펀드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펀드매니저 개인의 자의적판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공모주 투자회의를 통해 투자를 결정하는 **팀운용체제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팀의 결정에 대해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IPO 일정 체크	IR 및 CEO 미팅	밸류에이션 분석 외부 크로스 체크	투자심의위원회 실시 (공모주 투자회의)	수요예측 참여	• 배정/청약/납입 • 상장 후 매도 • Post IPO
• 각 증권사 IPO 일정 확인 • 거래소, 38커뮤니케이션 등 웹사이트 통해 확인	• 회사의 비전,성장 모멘텀 등 청취, 질의 응답 •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2회 이상 IR 참석	• 정량적 정성적 평가 - 잠재적 투자가치, 주력사업 전망 등 정성적 분석 - 매출액 대비 이익규모의 적정성, 적정 시가총액 산출 등 정량적 분석 병행	• 참여 여부 결정, 보유확약, 매도 전략 등 수립 • 분석 리포트를 중심으로 기업가치에 근거한 의사 결정	• 적정가격 및 밴드가격 상호 비교를 통한 투자매력도 점검 결과로 수요예측 참여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후속 업무 진행 • 상장 이후 종목 매도 전략 수립 등

(2) 채권운용전략

[기본 운용 전략]

- 우량채권에의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수익 달성을 목표로 포트폴리오 구성

▶신용리스크 최소화 전략

국공채, 통안채, 특수채, 은행채 등 우량 채권 위주의 투자를 통한 안정적 이자수익 추구

* 국공채: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 증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채권 등

▶시장리스크 최소화 전략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듀레이션을 1 년 내외로 제한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 최소화 추구

(3) 위험관리

- 채권부문: 1년 내외의 단기 듀레이션 유지로 시장위험 최소화하며 위험관리를 수행
- 주식부문: 투자실행 이전부터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 분석을 수행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리스크요인 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 비교지수 :(KOSPI지수 X 20%)+(CD금리 X 80%)

- KOSPI지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을 시가총액방식으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로, 주식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 CD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가 발행되어 유동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로 코픽스 금리와 함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단기금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1)비교지수 선정 사유: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투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구주 및 코스닥 대형주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일부 헤지 전략(선물매도)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모주식 투자비중 20%에 대해서는 시장을 대표하는 KOSPI 지수를 적용하고, 나머지 80%는 단기금리의 대표지표 중 하나인 3개월물 CD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이 투자신탁에서 수행하는 운용전략을 반영한 성과비교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주2)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생성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에는 변경등록 및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자본차익, 채권의 금리변동 및 공모주식의 가격변동 등 투자대상자산의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금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공모주 우선배정에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비상장 포함)(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투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관한 위험	아니하게 된 이후 7 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 미 충족 시에는 소득공제 및 공모주 청약 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투자하며, 공모주는 일반적인 상장 주식에 비해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 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주식 및 비상장 종목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비상장 포함) 주식 및 코스닥종목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반거래소상장기업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며, 가격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대량환매 발생시 편입자산의 유동성 및 환금성 제약으로 환매가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환매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기존 운용전략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익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이 벤처기업(비상장 포함)등임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투자하며, 공모주는 일반적인 상장 주식에 비해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11.매입·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나.환매/(7)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적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이 **12.42%** 이므로 투자위험 6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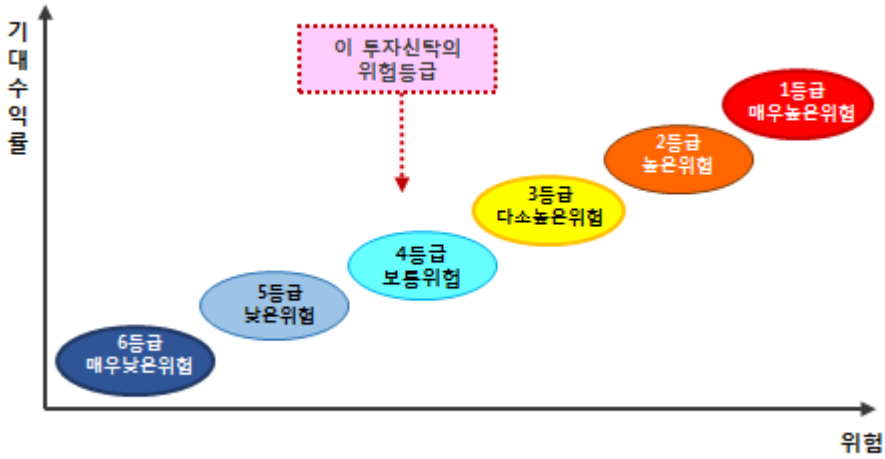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 설정 후 3년 경과 시, 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주1)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2)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주3)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합니다.

주4)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 (예)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웰컴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23.04.25.	2등급	4등급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2등급)->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4등급 : 7.81%)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 가능한 수익증권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 없음(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 (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 없음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집합투자기구,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최초매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오후3시 30분경과후**에자금을납입한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하지 않음)
		O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 또는 판매회사 인터넷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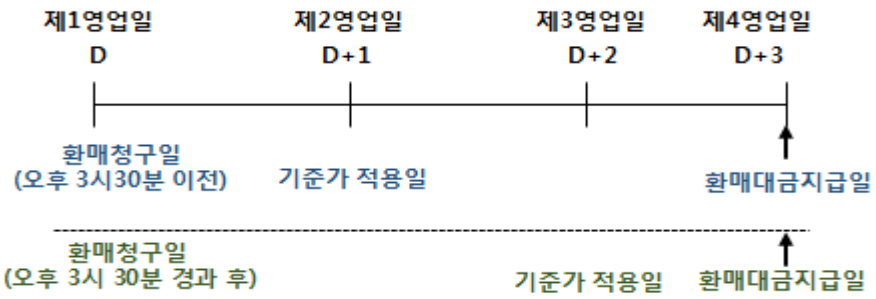

주)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종류형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종류명	환매수수료	지급시기
모든 종류형 수익증권	없음	환매 시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 연기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법시행령 제 256 조)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 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내지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은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welcomefund.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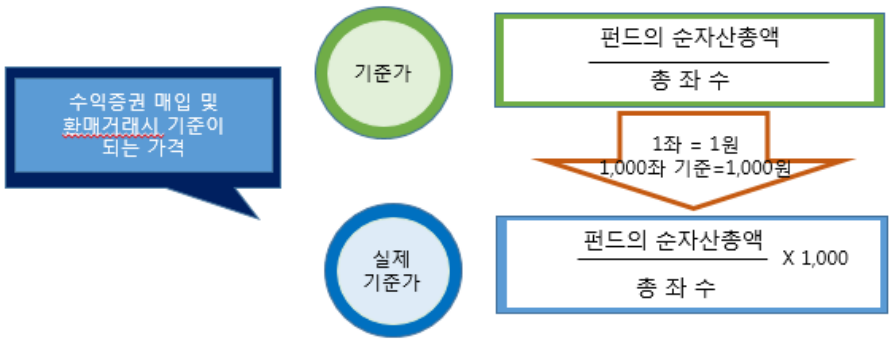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비상장・비등록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을 포함)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 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위 원: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본부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조직에 실장이 있는 경우 그 실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간 사: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팀장
업 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 또는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투자재산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약관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제한없음(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2% 이내	-	없음
수수료선취- 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 (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7% 이내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제한 없음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	집합투자기구,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수익증권(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9% 이내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수익증권(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최초매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	-	-	
지급 시기	-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수익증권의 현물발행 비용 등의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전환수수료가 없으며,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전환수수료 부과는 전환시 지급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기타비용	총 보수	총 보수 및 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동종유형보수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800	0.500	0.020	0.017	0.0140	1.3370	1.3510	1.3510	1.22	0.4509
수수료선취-온라인(A-E)	0.800	0.250	0.020	0.017	0.0145	1.0870	1.1015	1.1015	0.86	0.44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800	1.000	0.020	0.017	0.0117	1.8370	1.8487	1.8487	1.58	0.44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800	0.450	0.020	0.017	0.0121	1.2870	1.2991	1.2991	1.14	0.43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800	0.150	0.020	0.017	0.0093	0.9870	0.9963	0.9963	-	0.45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8000	-	0.0200	0.0170	-	0.8370	0.8370	0.8370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8000	0.4500	0.0200	0.0170	-	1.2870	1.2870	1.287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8000	0.8000	0.0200	0.0170	-	1.6370	1.6370	1.637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8000	0.2000	0.0200	0.0170	-	1.0370	1.0370	1.0370	-	-
보수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4.10 ~ 2026.04.09]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6,922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4.10 ~ 2026.04.09]
※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226,294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수익증권 종류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7	399	545	855	1,73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57	399	545	855	1,734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2	299	420	676	1,40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2	299	420	676	1,4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9	385	586	1,008	2,1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9	385	586	1,008	2,18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3	271	414	716	1,57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3	271	414	716	1,5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2	208	319	553	1,22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2	208	319	553	1,2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6	175	268	466	1,03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6	175	268	466	1,03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1	356	497	794	1,63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1	356	497	794	1,6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8	341	520	897	1,9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68	341	520	897	1,9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6	217	332	575	1,27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6	217	332	575	1,27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 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 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025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적용)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 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 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 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관한 과세**

구분	세부 내용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가입 자격	제한 없음(단, 소득공제혜택은 거주자에 한함)
계약 기간	3 년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적용기한은 2028.12.31 까지이며 따라서 2028.12.31 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대금 결제 분(매수대금 납입일 기준이 아님)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2028.12.31 경과 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미 적용)
세제 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 200만원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한도(연 2천만원) x 소득공제율(10%)
소득공제방법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감면세액추징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그 투자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투자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투자자 본인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5.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 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기(2025.04.10 - 2026.04.09)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5기(2024.04.10 - 2025.04.09)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4기(2023.04.10 - 2024.04.09)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통합 재무상태표			
항 목	제 6기 (2026.04.09)	제 5기 (2025.04.09)	제 4기 (2024.04.09)
운용자산	51,617,814,025	46,301,835,673	68,333,147,840
증권	41,751,500,842	34,918,308,454	56,361,294,67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866,313,183	11,383,527,219	11,971,853,16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580,273,254	1,549,156,794	1,664,456,403
자산총계	53,198,087,279	47,850,992,467	69,997,604,24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91,224,343	234,880,624	1,915,153,100
부채총계	191,224,343	234,880,624	1,915,153,100
원본	32,453,132,624	33,335,391,997	49,508,593,471
수익조정금	-142,585,734	-3,234,228,573	-2,732,283,873
이익잉여금	20,696,316,046	17,514,948,419	21,306,141,545
자본총계	53,006,862,936	47,616,111,843	68,082,451,143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6기 (2025.04.10 - 2026.04.09)	제 5기 (2024.04.10 - 2025.04.09)	제 4기 (2023.04.10 - 2024.04.09)
운용수익	7,363,095,584	3,962,891,671	7,175,412,318

이자수익	64,379,621	133,387,312	313,733,289
배당수익	125,976,624	113,886,441	139,685,355
매매/평가차익(손)	7,172,739,339	3,715,617,918	6,721,993,674
기타수익	111,436,394	32,570,541	105,213,592
운용비용	680,552,944	784,272,686	1,198,995,518
관련회사 보수	656,500,324	763,657,876	1,159,226,771
매매수수료	24,052,620	20,614,810	39,768,747
기타비용	17,827,386	30,868,647	25,924,790
당기순이익	6,776,151,648	3,180,320,879	6,055,705,602
매매회전율	189.71	174.39	348.78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주 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주 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5)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6기 111,436,394원, 5기 32,570,541원, 4기 105,213,592원 발생)
(주6)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4기 527원 발생)
(주7) 매매회전율 산출 관련 주식 매수·매도 금액, 보유주식의 평균가액,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677,855	56,568	3,208,309	81,282	42,846	189.71	32.20

(주8)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주식·주식이외의 증권·부동산·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등) 거래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4.10 - 2026.04.09)			전기(2024.04.10 - 2025.04.09)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29,431	199.8944	0.1544	137,817	230.3609	0.1672
주식이외의증권 (채권등)	-	-	-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283,403	24.0526	0.0085	263,674	20.6148	0.0078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42,282	2.3474	0.0056	71,555	0.8870	0.0012
합계	455,115	226.2945	0.0497	473,045	251.8627	0.0532

나. 통합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6기(2026.04.09)		제5기(2025.04.09)		제4기(2024.04.09)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9,866,313,183		11,383,527,219		11,971,853,165
1. 현금및현금성자산	2,362,520,179		947,364,260		2,497,930,888	
2. 예치금						
3. 증거금	7,503,793,004		10,436,162,959		9,473,922,277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41,751,500,842		34,918,308,454		56,361,294,675
1. 지분증권	41,751,500,842		34,918,308,454		56,361,294,675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580,273,254		1,549,156,794		1,664,456,40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945,127,885		563,280,309		1,074,323,742	
2. 정산미수금	511,880,000		875,472,000			
3. 미수이자	1,201,185		656,486		2,105,731	
4. 미수배당금	110,526,596		96,868,481		121,948,332	
5. 기타미수입금	11,537,588		12,879,518		466,078,598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53,198,087,279		47,850,992,467		69,997,604,243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91,224,343		234,880,624		1,915,153,10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51,804,944		617,831,628	
2. 정산미지급금					144,440,000	
3. 해지미지급금	23,037,573		25,717,398		930,532,353	
4. 수수료미지급금	168,186,770		157,358,282		222,349,119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91,224,343		234,880,624		1,915,153,100
자 본						
1. 원 본	32,453,132,624		33,335,391,997		49,508,593,47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0,553,730,312		14,280,719,846		18,573,857,672	
(발행좌수 당기: 32,453,132,624 좌	이익잉여금	20,696,316,046		17,514,948,419		21,306,141,545
전기: 33,335,391,997 좌	수익조정금	-142,585,734		-3,234,228,573		-2,732,283,873
전전기: 49,508,593,471 좌)						
(기준가격 당기: 1,750.04 원						
전기: 1,509.98 원						
전전기: 1,430.60 원)						
자 본 총 계		53,006,862,936		47,616,111,843		68,082,451,14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3,198,087,279		47,850,992,467		69,997,604,243

다. 통합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6기(2025.04.10-2026.04.09)		제5기(2024.04.10-2025.04.09)		제4기(2023.04.10-2024.04.09)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90,356,245		247,273,753		453,418,644
1. 이 자 수 익	64,379,621		133,387,312		313,733,289	
2. 배당금수익	125,976,624		113,886,441		139,685,355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83,661,087,993		75,932,891,409		129,943,569,225
1. 지분증권매매차익	19,180,275,198		12,786,452,350		32,351,222,609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51,966,588,000		63,113,826,000		97,485,258,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12,402,746,395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11,478,400		32,613,059		107,088,616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76,400,964,880		72,205,317,760		123,156,130,706
1. 지분증권매매차손	6,643,116,260		9,977,826,630		16,856,852,73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69,757,848,620		53,358,490,810		102,426,939,747	
4. 지분증권평가차손			8,868,994,906		3,872,336,155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5,414		2,070	
운 용 비 용		674,327,710		794,526,523		1,185,151,561
1. 운용수수료	402,773,504		469,562,795		700,940,496	
2. 판매수수료	243,658,250		282,356,771		440,763,353	
3. 수탁수수료	10,068,570		11,738,310		17,522,922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7,827,386		30,868,647		25,924,79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6,776,151,648		3,180,320,879		6,055,705,602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208798076		0.095403734		0.12231625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10 - 2026.04.09	315	476	133	227	146	245	302	532
2024.04.10 - 2025.04.09	474	678	97	140	255	380	315	478
2023.04.10 - 2024.04.09	714	947	176	241	416	577	474	683

(주1) 2025.04.10 - 2026.04.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2,449,481좌/21,787,036원

(주2) 2023.04.10 - 2024.04.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97,167좌/1,283,504원

나. 종류형펀드

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10 - 2026.04.09	266	384	93	150	99	158	260	432
2024.04.10 - 2025.04.09	409	566	27	39	171	245	266	384
2023.04.10 - 2024.04.09	606	781	145	192	342	458	409	566

(주1) 2025.04.10 - 2026.04.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684,825좌/17,762,506원

(주2) 2023.04.10 - 2024.04.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71,965좌/1,067,401원

2)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10 - 2026.04.09	27	40	16	26	16	26	27	46
2024.04.10 - 2025.04.09	43	61	7	9	23	33	27	40
2023.04.10 - 2024.04.09	64	83	9	11	29	39	43	61

(주1) 2025.04.10 - 2026.04.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22,427좌/1,893,699원

(주2) 2023.04.10 - 2024.04.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1,687좌/114,062원

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10 - 2026.04.09	15	21	1	1	6	9	9	15
2024.04.10 - 2025.04.09	21	28	0	0	6	9	15	21
2023.04.10 - 2024.04.09	48	61	2	3	29	38	21	28

(주1) 2025.04.10 - 2026.04.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75,549좌/606,020원

(주2) 2023.04.10 - 2024.04.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9,586좌/53,654원

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10 - 2026.04.09	11	16	17	27	22	34	6	11
2024.04.10 - 2025.04.09	11	16	2	2	2	3	11	16
2023.04.10 - 2024.04.09	17	23	13	18	19	26	11	16

(주1) 2025.04.10 - 2026.04.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57,292좌/428,941원

(주2) 2023.04.10 - 2024.04.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1,340좌/29,559원

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10 - 2026.04.09	15	16	16	20	9	11	22	27
2024.04.10 - 2025.04.09	10	10	83	84	78	81	15	16
2023.04.10 - 2024.04.09	2	3	10	10	2	3	10	10

(주1) 2025.04.10 - 2026.04.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04,325좌/1,095,870원
(주2) 2023.04.10 - 2024.04.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8,809좌/18,828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04.17 ~ 26.04.16	24.04.17 ~ 26.04.16	23.04.17 ~ 26.04.16	21.04.17 ~ 26.04.16	20.04.10 ~ 26.04.16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15.99	12.03	10.78	6.61	10.63
비교지수	24.28	12.46	9.39	5.41	6.59
수익률변동성(%)	7.52	6.97	6.61	6.98	7.2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4.48	10.56	9.32	5.20	9.18
비교지수	24.28	12.46	9.39	5.41	6.59
수익률변동성(%)	7.52	6.97	6.61	6.98	7.21
수수료선취-온라인(A-E)	14.76	10.83	9.59	5.46	9.44
비교지수	24.28	12.46	9.39	5.41	6.59
수익률변동성(%)	7.52	6.97	6.61	6.98	7.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3.92	10.01	8.79	4.68	8.64
비교지수	24.28	12.46	9.39	5.41	6.59
수익률변동성(%)	7.52	6.97	6.61	6.98	7.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4.53	10.61	9.38	5.26	9.23
비교지수	24.28	12.46	9.39	5.41	6.59
수익률변동성(%)	7.52	6.97	6.61	6.98	7.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14.87	10.94	-1.94	-1.31	3.59
비교지수	24.28	12.46	3.79	2.14	3.83
수익률변동성(%)	7.52	6.97	6.61	6.98	7.21

(주 1) 비교지수: (0.2 * [KOSPI]) + (0.8 * [CD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이며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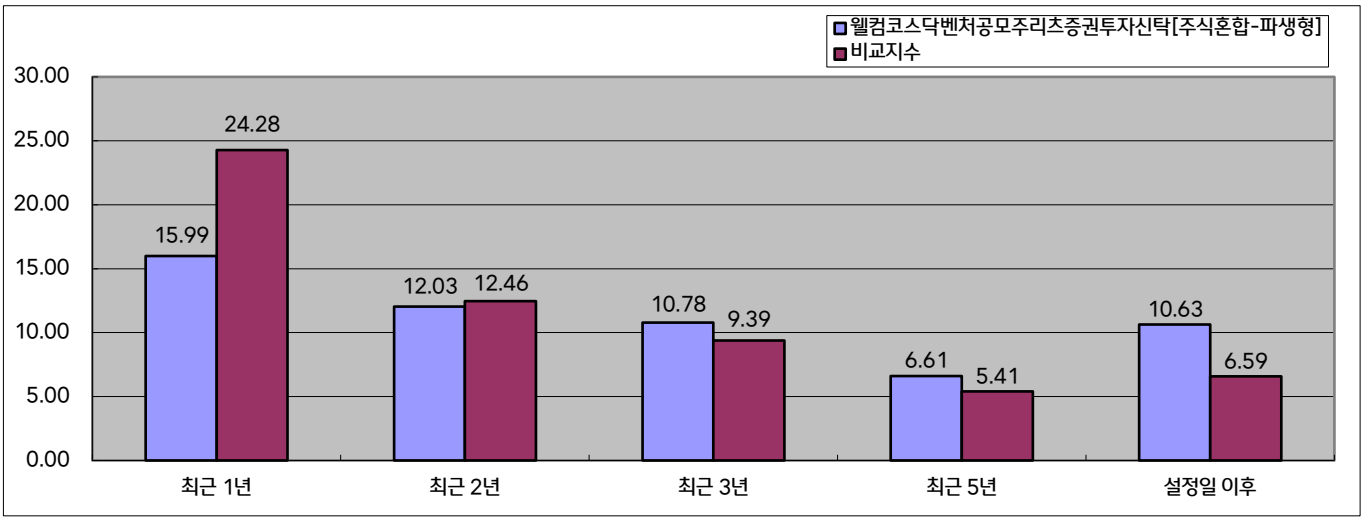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5.04.17 ~ 26.04.16	24.04.17 ~ 25.04.16	23.04.17 ~ 24.04.16	22.04.17 ~ 23.04.16	21.04.17 ~ 22.04.16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15.99	8.20	8.35	2.96	-1.62
비교지수	24.28	1.76	3.53	1.80	-2.3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4.48	6.77	6.93	1.59	-2.92
비교지수	24.28	1.76	3.53	1.80	-2.36
수수료선취-온라인(A-E)	14.76	7.04	7.19	1.84	-2.69
비교지수	24.28	1.76	3.53	1.80	-2.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3.92	6.24	6.40	1.08	-3.41
비교지수	24.28	1.76	3.53	1.80	-2.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4.53	6.82	6.98	1.64	-2.88
비교지수	24.28	1.76	3.53	1.80	-2.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14.87	7.14	-23.40	1.95	-2.59
비교지수	24.28	1.76	-11.58	1.80	-2.36

(주 1) 비교지수: (0.2 * [KOSPI]) + (0.8 * [CD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 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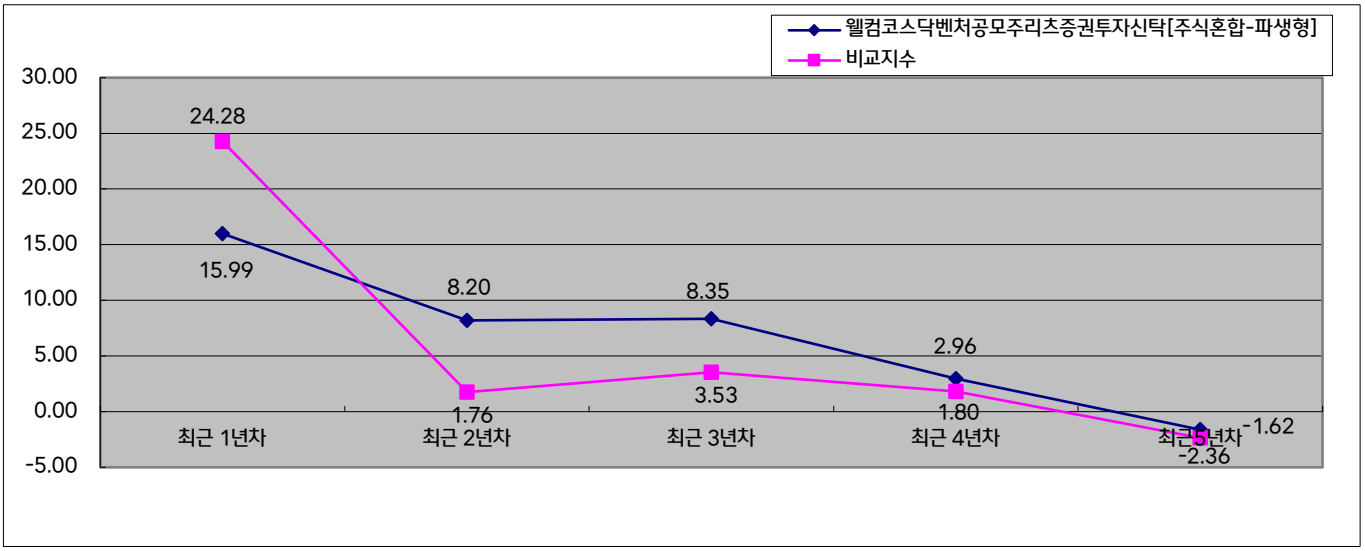

라.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6.04.16. 현재 /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445	0	0	0	0	0	0	0	0	34	73	553
	(80.5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18)	(13.29)	(100.00)
합계	445	0	0	0	0	0	0	0	0	34	73	553
	(80.5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18)	(13.29)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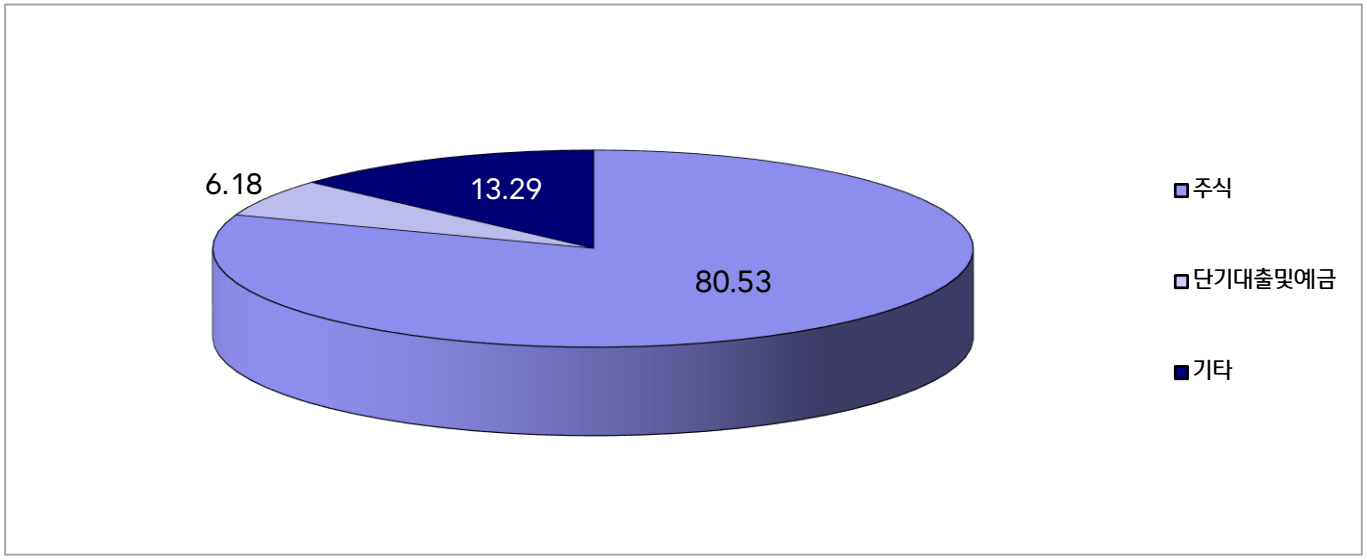
6.18
13.29
80.53
주식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펀드 운용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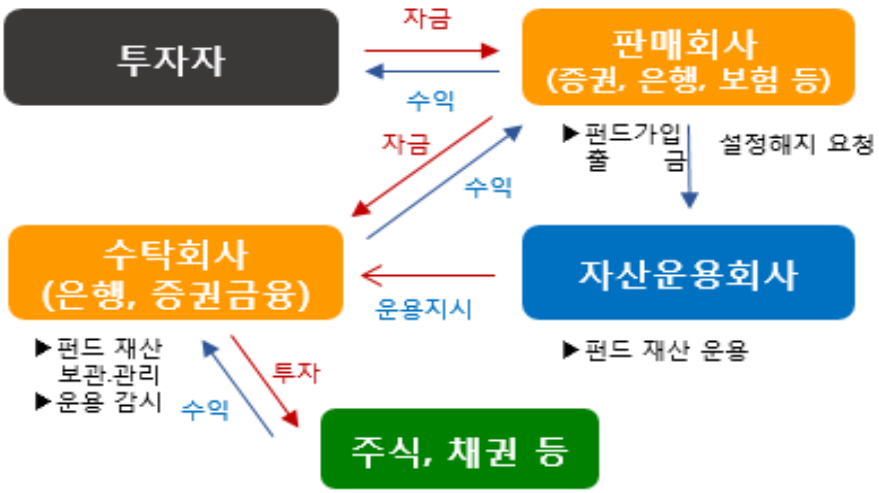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웰컴금융타워 15층 (연락처: 02-6353-7300, www.welcomefund.co.kr)
회사연혁	2000.03.13: AIG 투자자문코리아주식회사 설립 2008.07.2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자산운용업 인가 2008.09.01: 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09.02.04: 자본시장법에 의거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인가 전환 2009.10.16: 파인브릿지 자산운용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17.07.19: 에셋원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22. 04. 19: 웰컴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22.10. 24: 본점 소재지 이전
납입자본금	125억원
주요주주현황	웰컴크레디라인㈜(100%)
이해관계인	해당 사항 없음 ※이해관계인 현황은 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상황이며, 운용펀드의 수탁 및 판매현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 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7 기 ('25.12.31.)	제 26 기 ('24.12.31.)
현금및예치금	7,297	7,839
매도가능금융자산	18,435	12,394
유형자산	8,000	8,295
무형자산	56	62
기타자산	2,046	2,057
자산총계	**35,834**	**30,647**
기타부채	10,381	8,980
부채총계	**10,381**	**8,980**
자본금	12,512	12,512
주식발행초과금	1,054	1,054
자본조정	-	-
이익잉여금(결손금)	11,960	8,101
자본총계	**25,526**	**21,667**
부채와자본총계	35,834	30,647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7 기 (25.01.01~25.12.31)	제 26 기 (24.01.01~24.12.31)
영업수익	11,983	7,594
영업비용	7,087	7,417
영업외손익	12	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908	187
당기순이익	3,859	164

라. 운용자산 규모(2026.04.16.기준 /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	파생형					
수탁고	1,145	513	4,090	-	913	1,438	9,331	-	613	5,181	23,225

2.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대표전화: ☏02-3770-88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sfc.co.kr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 사항

- ㅇ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ㅇ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ㅇ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ㅇ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ㅇ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ㅇ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ㅇ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ㅇ 신탁업자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 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대표전화: ☏02-2180-0400)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의무

[의무]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 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종로구 율곡로88 ☏ 02-2251-13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도동35-4 ☏ 02-3215-14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11 ☏ 02-398-39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 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 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②의결권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위의 ②의결권행사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5분의1 이상"은"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 각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 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9)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 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하는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 분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 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 제125조 각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 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집합투자기구를 처리계획을 수행합니다.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규약 변경을 통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소규모 펀드로 인한 임의 해지 또는 다른 펀드로의 전환 등으로 소득공제혜택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유자금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 해지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제87조제8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 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 당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 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 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그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 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 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험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계약금액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 손익구조
- 시나리오법에 의한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 10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측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VaR)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유진투자증권	관계증권	위탁거래	주식	2,878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 증권 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고유재산 의무투자

구분	내 용
투자주체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운용 강화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 마련하고자 함
투자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 설정일로부터 최소 3년이상
	고유재산 의무 투자기간 종료 ※투자금액 회수: 2023.05.04(목) : 2억 (2023.04.28(금) 환매청구)
투자금 회수계획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예정 -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액이 투자신탁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 분할 회수는 회 차 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액의 50% 이내로 함 - "투자기간 종료 이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기간 종류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임, - 투자금 환매 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

주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상 존속기한까지 투자. 다만, 당초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이었으나, 집합투자자총회 등을 통해 존속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3년간 투자
②당연 해지사유 발생,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③다른 펀드로 편입(신규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④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는 의무투자기간(종전 보유기간 합산)까지 자사 펀드 투자를 유지]
주2)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유재산 추가투자

구분	내 용
투자주체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목적	투자신탁의 효율적 운용 및 판매활성화 도모
투자금액	상기 '가'의 고유재산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음
투자기간	정해진 투자기간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의 계획에 따라 회수될 수 있음
투자금액 회수계획	투자금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 투자신탁의 적정 설정규모 달성 등에 따라 회수될 예정입니다.
추가투자 내역	①2024.07.02(화) : 6억 (2024.07.01(월) 설정청구)

주1) 투자금 추가 투자 및 환매 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상에 추가 투자 및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고유재산 투자 및 회수내역은 금액 기준입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 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 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벤치마크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